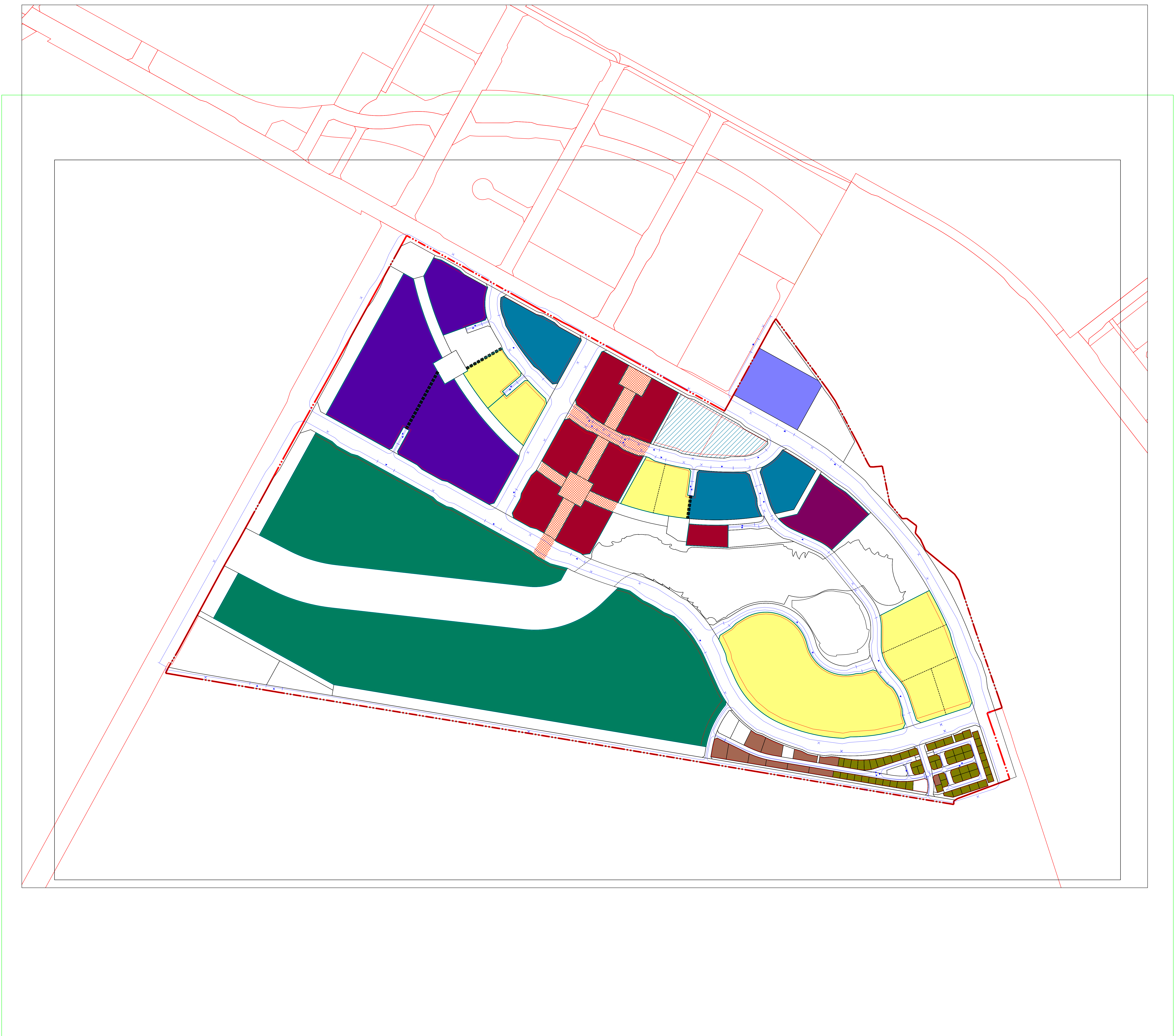






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
종합결정(변경)도

■ 범 레

배치 및 동선

- 지구단위계획구역

특별계획구역

획지경계선

건축한계선

입체공공보행통로허용구간

공공보행통로

차량출입불허구간

차량출입허용구간

높이(층수)제한선

대지분할가능선

밀도

최대용적률(%)	최대건폐율(%)
최저높이	최대높이
위치	

특별계획구역 및 업무, 문화시설

구 분	전층 권장용도 (70%이상)	불허용도
	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	- 운수시설 :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- 의료시설 :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- 공장 : 물품의 제조,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- 창고시설 : 창고, 하역장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: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 액화가스 판매소, 유독물보관/저장시설, 고압가스충전/저장소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: 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 도계장, 버섯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, 식물과 관련된 유사시설 -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: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- 묘지관련시설 : 화장장, 납골당,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	숙박시설	
	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	
	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	
	업무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, 방송통신시설	
	방송통신시설	
	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공연장, 라목 전시장), 방송통신시설	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(마목 공연장), 업무시설이외의 용도
	문화 및 집회시설, 관광휴게시설, 위락시설 (‘관광진흥법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(방송국_방송프로그램제작 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_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	권장시설외의 용도

주거용지

구분	전층 권장용도 (100%)	불허용도
	단독주택	권장시설 이외의 용도
	근린생활시설	제2종 근린생활시설 : 300 ㎡를 초과하는 휴게음식점, 제조업소, 게임제공업소,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, 복합유통·제공업소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, 안마시술소 및 100 ㎡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